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소방 설계·감리의 원칙적 분리 발주〉

■ 신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44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원칙적 분리 발주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신정훈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8. 19.
3. 회부연월일 : 2025. 8.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 설계·감리업체가 소방 설계·감리를 포함하여 건설 등 여러 공종을 함께 일괄 도급받는 경우, 발주자의 미완공 상태에서의 사용 승인을 위한 소방 감리에 대한 압박과 같은 불법·부당한 요구가 발생하였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가 원인이 된 대표적 사례로 지난 2월 발생한 부산의 대형 리조트 화재 사고가 있으며, 현행 제도상 향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더불어 일괄 도급에 따른 불공정한 입찰 환경이 조성되어 전문적으로 소방 설계·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상실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위축 등으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됨은 물론이고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의 시공과 같이 건설, 전기 등 각

공종 간 수평적 관계로 견제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소방 설계·감리 분야에도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로 인해 소방분야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모든 업체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여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방 설계·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은 물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및 제37조).

Ⅲ. 검토의견

1. 소방시설 설계·감리의 원칙적 분리 발주

개정안은 소방시설설계 또는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 또는 감리 용역과 각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및 제37조 제4호의2).

현행	개정안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생략)	제21조(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 ① (현행과 같음)
② <u>소방시설공사</u> 는 다른 업종의 <u>공사</u> 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업종의 <u>공사와</u> 분리하지 아니하고 도급할 수 있다.	② <u>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또는 감리</u> (이하 “ <u>설계등</u> ”이라 한다)--- <u>설계등과</u> ----- ----- ----- ----- <u>설계등과</u> ----- -----.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벌칙)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1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u>소방시설공사</u> 를 다른 업종의 <u>공사와</u>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4의2. ----- <u>소방시설의 설계등을</u> ----- <u>설계등과</u>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의 분리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 체결을 말한다)하는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감리 용역부터 적용한다.

소방시설업은 크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으로 구분됨¹⁾. 소방시설공사업은 2020년 6월에 다른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4.12.30., 2018.2.9., 2021.11.30.>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방기술자"란 제28조에 따라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공종(工種)²⁾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 도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분리도급의 예외로 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었고³⁾,

이 법 시행령에서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의 예외 사유로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
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연면적이 1천제곱미
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
제안입찰 등을 규정하고 있음(영 제11조의2)⁴⁾.

5.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
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험물안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2.9.,
2021.11.30.>

[전문개정 2010.7.23.]

2) 공사의 종류별이란 뜻으로 건축 공종, 소방 공종, 전기 공종, 통신 공종 등을 말함.

3) 2020년 소방시설공사의 분리 도급이 도입될 당시 관련 개정 법률안*에는 소방시설공사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도 분리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분리도급 방식이 통합발주 방식에 비해 효율성 및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개진되었고,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에서도 설계·감리 분야는 분리 발주 하고 있지 않다는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의 입장을 소방청이 수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소방시설공사만을 대상
으로 한 분리도급 의무화 규정이 도입되었음.

* 장정숙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6937호, 제안일
2017.5.18.)

** 제377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0. 5. 11. 5-12면)

***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장정숙의원 대표발의, 2017. 5. 18.,
2006937, 9면), 제377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0. 5. 11. 5-12면), 제377회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 회
의록, 2020. 5. 12. 16-17면)

4) 「소방시설공사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
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 2024.5.7.>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
는 공사인 경우

참고로, 2020년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분리도급 제도 도입 이후 소방
업계의 현황을 보면⁵⁾,

제도 시행 전·후인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할 때 소방시설업 관련
기술자 채용은 3만 2,730명(29.8%)이 증가하고 소방시설공사 실적신고
액은 1조 6,044억원(24.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공사업체의 기술개발투자비 역시 분리도급 도입 이전 대비 약
106억원(6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분리도급제도가 소방시설공사업체
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공사의 안전성이나 품질 향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3. 제4조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인 경우
 4.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로 시행되는 공사인 경우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5의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연구시설·개발시설 또는 그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공사인 경우
 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및 재개발·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5) 참고로 전기공사는 1977년 「전기공사업법」(법률 제2967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는 1971년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법률 제2307호)에 따라 각각 분리발주 제도를 도입·시행한 반면, 소방시설공사는 2020년에 들어서야 분리발주가 도입·시행되어 약 40년 이상 늦게 정착됨.
- 「전기공사업법」
- 제22조(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신전화설비공사업법」
- 제13조(도급계약의 분리) 공사는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타났는데, 소방시설등⁶⁾의 종합점검 불량률은 제도시행 전·후인 2019년과 2022년을 비교할 때 18.8% 감소하였고(2019 : 63.2% → 2022 : 44.4%) 2023년에는 2019년도 대비 31.3% 감소하여(2019 : 63.2% → 2023 : 31.9%), 분리도급 제도가 시공 품질 향상과 안전 확보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⁷⁾.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의무화 전후 현황 비교>

구 분	연도	소방시설업 관련 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체 실적신고액
		종사자 수	선임기술자	금액
분리도급 이전	2019년	109,487명	29,373명	64,313억원
분리도급 이후	2022년	142,217명	34,191명	80,357억원
이전 대비 증감(%)		32,730명(29.8%)	4,818명(16.4%)	16,044억원(24.9%)

※ 소방시설공사업체 신고실적 자료 조사방법

○ 2019년 ~ 2023년 시공능력평가 자료를 통한 5개년('18~'22) 실적 분석

-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는 전년도 실적 기준으로 평가

○ 분리도급 제도 시행 이후 계약 공사는 기존 연차공사* 제외

* 공사 착공연도와 완공연도가 다른 공사(예시: '20.9월 착공/'21.3월 완공

(자료: 소방시설협회)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7. (생략)

7) 다만, 분리도급제도 도입 후 종합점검 불량률 외의 공사의 안전성이나 품질 향상 여부에 대해 참고할 만한 조사·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데, 소방청은 제도 확대 여부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분리도급제도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임.

<분리도급 이전('19년) 대비 소방공사업체 기술개발투자비 통계>

(단위 : 억원)

연 도	기술개발투자비	증가액	증가율
2019	155	-	-
2023	261	106	68.3%

※ 기술개발투자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또는 업무 관련 시설 및 기기 구매 사용비

※ 출처: 한국소방시설협회 종합정보시스템(시공능력평가 신고 기준)

(자료: 소방시설협회)

<분리도급 이전('19년) 대비 소방시설등 종합점검 결과 불량률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연도	점검대상	불량	불량률	증가율
분리도급 이전	2019년	66,760	42,175	63.2%	△18.8%
분리도급 이후	2022년	223,081	99,084	44.4%	
	2023년	195,457	62,257	31.9%	△31.3%

※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등의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 출처: 소방청 통계연보

(자료: 소방시설협회)

한편, 현재 소방공사감리 용역은 다른 업종의 용역과의 분리 도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지만,

현행 법령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대해서 시·도지사 등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소방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와 별도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하여야

하는 등(법 제26조의2제2항 및 영 제12조의9제1항·제2항)⁸⁾⁹⁾,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의 소방감리 부문에 한해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음¹⁰⁾.

참고로,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분리 발주제도가 2022년에 도입되어 2023년 11월부터 시행 중인데¹¹⁾,

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설계·감리업자의 선정)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그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1.5., 2024.1.3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9(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해야 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으로서 300세대 이상인 것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감리업자지정권자"라 한다)는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른 공사와는 별도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의 모집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1.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2.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9) 2016년 이전에는 이 법이 설계·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로 인해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당 경쟁이 발생하여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음. 이러한 점을 시정하고자 법률 제13918호(2016. 1. 27. 공포, 시행)에 따라 제26조의2가 신설되었음(출처: 정용기의원 대표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 7. 7면).

10) 동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소방청은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방시설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민간 발주자가 아닌 시도지사 등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인가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함.

11)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용역 분리 발주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년 10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2년 11월 15일 공포되었으며(법률 제19042호), 2023년 11월 16일부터 시행 중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3(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2.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분리발주제 도입 이전인 2022년 대비 분리발주제 도입(2023.11.) 이후인 2024년의 전기 설계 및 전기 감리 발주금액을 살펴보면, 전기 설계업과 전기감리업은 각각 34.0%, 146.2% 증가하였고 발주건수는 전기 설계업은 4.3%, 전기감리업은 42.8% 증가하였음.

<전기 설계·감리 발주금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A)	2023년	2024년(B)	비고 (B-A/A)
전기 설계	60,040	83,334	97,603	111,674	34.0
전기 감리	71,178	71,515	99,900	176,095	146.2

[자료: 소방시설협회(출처 : 조달청 조달통계, 기술용역 분류별 실적순위)]

<전기 설계·감리 발주건수>

(단위 :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B-A/A)
전기 설계	5,393	5,788	6,832	6,035	4.3
전기 감리	2,498	2,549	3,222	3,639	42.8

[자료: 소방시설협회(출처 : 조달청 조달통계, 기술용역 분류별 실적순위)]

[본조신설 2022. 11. 1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6(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같은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인 경우
2.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되는 공사로서 기밀 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5.]

개정안은 현재 소방시설공사업과 달리 분리도급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도 그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건설, 전기 등 다른 업종의 설계·감리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현행 소방공사 분리발주 원칙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시설인데, 그동안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률에 소방 설계·감리 분리 도급 원칙에 관한 규정이 없어 발주기관은 법적 제한 없이 계약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과정의 효율성과 절차 간소화 등을 이유로 다수의 발주기관이 소방 설계 또는 소방 감리를 다른 공종의 설계 또는 감리와 하나의 계약으로 묶는 통합발주 방식을 활용해 왔음.

<소방 설계·감리 입찰공고 현황(2022~2024)>

구 분	합 계	소방단독 발주	통합발주
소방 설계	4,444건	553건(12.4%)	3,891건(87.6%)
소방 감리	2,466건	1,254건(50.9%) ¹²⁾	1,212건(49.1%)

(자료: 소방시설협회)

12) 소방 감리 분리도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법 제26조의2제2항 및 영 제12조의9제1항·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택건설공사에서 이미 분리도급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 관련 법령 내용은 각주 8) 참조

그런데, 소방 설계업 및 감리업체 현황을 보면 소방설계·감리업 모두 소방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의 비율이 약 80%에 해당하고, 타 공종을 겸업하는 업체는 약 20%에 불과함. 이는 통합으로 발주되는 설계·감리 용역을 도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전체 설계·감리 업체의 약 20%에 불과하다는 의미로 현행 제도하에서는 실제로 소방업체 간 균등한 입찰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소방설계업 및 감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

업 종	계	소방단독	겸업	비 고
소방설계업	876 (100%)	722 (82.4%)	154 (17.6%)	
소방감리업	366 (100%)	330 (90.2%)	36 (9.8%)	
소방설계업, 소방감리업	496 (100%)	376 (75.8%)	120 (24.2%)	

(자료: 소방청)

또한, 소방시설의 설치에 공사의 기본이 되는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이 시공이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지도하는 감리까지 하나의 연속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방공사사업만 분리 발주하도록 하는 것은 시설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¹³⁾.

13) 김중천, 소방공사 분리도급 제도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제도 도입 필요성, 신정훈 의원실·이성권 의원실 주최 소방공사 분리도급 정착과 설계·감리 분리도급 타당성 정책토론회 자료집, 26-27면.

이에 개정안과 같이 소방 설계·감리 분리도급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소방업체 간 균등한 입찰기회를 부여하여 공정 경쟁을 통한 소방 설계·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고 소방시설업의 독립성과 통일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이라고 보임.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원칙적 분리발주 대상	-소방시설공사업	-(좌 동)	
		-소방시설설계업	추가
		-소방공사감리업	추가
분리발주 위반시 벌칙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설계·감리 분리발주 위반시에도 공사분리발주와 동일한 벌칙 적용

다만,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 원칙을 법률에 규정할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찬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품질 확보 여부, 하자 책임 명확화 여부, 발주자의 비용 부담 증가 여부, 분리 발주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먼저,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 입법화에 반대하는 논거로는¹⁴⁾,

기존 건축물 설계자의 종합조정 기능 약화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
감리 과정에서 각 부분의 정합성이 결여되는 등 타 공종과 소방 설계·
감리 간의 유기적 연계와 조율이 어려워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설계용역은 공사와 달리 연속적·통합적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어서
분리도급 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 중첩, 누락 등 업역 간 갈등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져 상호 책임 전가로 인한 하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분야 간 충분한 협의·조정 과정이 미흡할 경우 재시공 또는 공사
기간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의 우려가 있고, 설계 변경이나 현장
특수 사항 반영이 지연되어 업무 연계가 어려워지며 시공사 입장에서는
설계도면의 적합 여부를 공종별로 재차 확인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EPC 방식¹⁵⁾으로
발주되고 있는데 소방공사 설계·감리 분리 발주 시 해외건설 경쟁력
약화와 해외공사 수주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분리발주의 확대는 건설과 AI, IC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인프라

14) 이하는 건설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의 의견임.

15)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방식이란 해당공사의 설계 및 자재조달, 시공까지의 전과정을 일괄 수주하는 것으로, 계약자는 설계를 계획하고 필요한 자재를 구하여 설치·시공하며 발생하는 고정비용의 재정부담과 그에 따른 리스크도 낙찰자가 책임지는 방식

구축에도 상당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음.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분리발주 입법화에 찬성하는 논거로는¹⁶⁾,

타 공종과 소방 설계·감리 간의 유기적 연계와 조율은 발주 방식 (일괄 또는 분리)과는 무관하며, 용역에 참여한 업체 간의 정기적인 조정회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분리 도급으로 인해 종합조정 기능이 약화되거나 품질이 저하될 우려는 없으며,

이미 소방 설계는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해 2009년 이후 성능위주설계¹⁷⁾를

16) 이하는 소방시설협회의 의견임

17) 소방 성능위주설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은 2005년 8월 4일 공포 (법률 제7660호), 성능위주설계 적용 범위는 시행령(대통령령 제19846호)에서 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됨.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설계) ① (생 략)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이하 "성능위주설계"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성능위주설계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

통해 분리 도급이 시행되어 왔고¹⁸⁾, 소방공사감리의 경우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2년부터 분리도급하고 있는데 그 동안 특별한 문제가 없었으며,

분리도급은 설계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 방식만 조정하는 것인데, 순수 소방 설계·감리 전문업체가 참여할 경우 전문성이 강화되고 설계·감리 오류가 감소할 수 있고,

검업업체가 우위를 점하는 기존 구조를 개선하고 순수 소방 설계·감리 전문업체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고 경쟁력 향상을 통해 소방 설계·감리 분야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으며,

해외 소방 설계·감리의 발주 방식(일괄 또는 분리)은 해당 국가의 법령 및 제도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국내의 분리도급 제도와 해외 건설 경쟁력 약화나 수주 실적 저하 간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고, 오히려 분리도급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갖춘 전문업체들이 독자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어

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18) 성능위주설계는 건물의 용도, 구조, 수용인원, 가연물 등 화재 위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방시설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분리발주를 의무화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별도의 신고 절차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적 특성과 소방기술사 2명 이상을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등 자격요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수의 발주기관에서 소방 설계를 타 공종 설계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방식을 활용해 왔음.

<최근 3년 소방 성능위주설계 입찰공고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소방 성능위주설계	11건(분리도급)	11건(분리도급)	27건(분리도급)

(출처 : 조달청 나라장터; 소방시설협회 제공)

국내 소방기술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해외 진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 등이 제시되고 있음.

그 밖에 개정안은 소방시설 설계 및 감리 분리발주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37조제4호의2).

현재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반하는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제37조제4호의2), 소방시설공사업이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과 동일하게 소방시설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방시설설계나 소방공사감리의 분리발주를 위반하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을 입법하는 경우 안 제21조제2항 단서 이하의 “공사”에 대한 법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 제21조제2항 본문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여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공사” 역시 “소방시설공사”를 의미한다고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방시설의 시공뿐만 아니라 설계와 감리도 분리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같은 항 단서의 “공사”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분리도급을 통하여 모든 업체들에게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경쟁 활성화를 통해 소방시설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국토교통부는 현행 제도에서도 소방설계·감리는 건축설계·감리와 분리하여 시행할 수 있고,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설계할 때에는 건축물의 설계자와 유기적인 협력 하에 다른 설계도서와의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건축설계와 소방설계를 의무적으로 분리 발주할 경우 건축주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이견 발생으로 인한 업무지연, 정합되지 않은 설계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며,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300세대 미만 소규모 주택건설공사의 경우도 감리의 분리발주가 필요하므로¹⁹⁾ 감리비용 증가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점이 있어,

원칙적으로 소방설계·감리를 분리도급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조달청은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도 의견이 없으나,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시행령 개정 시 기술형 입찰²⁰⁾은 소방시설 설계 분리

19) 현재는 300세대 이상 주택 건설공사의 경우만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하고 있음(「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9제1항).

20)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발주의 예외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351

- 기술형입찰은 공종별 또는 복합공종간 업체의 기술제안을 허용하여 국가 중요시설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입찰자가 공법변경 등 기술제안 내용에 따라 설계서가 확정 되므로 기술제안-설계-시공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소방시설설계가 기술제안에서 배제될 경우 기술형 입찰의 제도취지가 도태되고 공사비 추가발생 또는 공기 연장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술형 입찰은 소방시설설계 분리발주의 예외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소방시설설계 분리발주' 예외 조항 신설의견(조달청)>

- (소방시설설계 분리 도급의 예외)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대안입찰 또는 일괄 입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또는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자료: 소방시설협회)

□ 건축 절차 흐름도



① 설계 단계

- 공종별(공사의 종류별이란 뜻으로 건축 공종, 소방 공종, 전기 공종, 통신 공종 등을 말한다)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등을 통해 평면도(위에서 바라본 그림), 입면도(정면 또는 측면에서 본 그림), 단면도(세로로 자른 단면을 본 그림), 상세도면 등을 작성하는 단계

② 시공사 선정 단계

- 공종별 공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사 착공 준비 단계

③ 감리자 지정 단계

- 공종별 감리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공종별 설계·시공 감리를 통해 적정성 검토 및 품질 확인 단계

④ 착공 단계

- 공종별 공사 시공 단계
: 골조공사(기초 → 철근콘크리트, 철골 등 구조체 → 지붕), 설비공사(소방, 전기, 통신), 마감공사(외벽, 창호, 벽, 바닥, 천장 등)

⑤ 사용승인 단계

- 공종별 준공검사 및 완공검사 등을 통해 사용승인 후 건물 사용

□ 건축·소방·전기·통신 설계-공사-감리 비교표

구 분	설 계	공 사	감 리
건 축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사 설계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업체 시공	▸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 건축사 감리
소 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 분리도급(x) ▸ 소방설계업체 설계	▸ 소방시설공사업법 ▸ 분리도급(O) ▸ 소방공사업체 시공	▸ 소방시설공사업법 ▸ 분리도급(x) ▸ 소방감리원 감리
전 기	▸ 전력기술관리법 ▸ 분리도급(O) ▸ 전기설계업체 설계	▸ 전기공사업법 ▸ 분리도급(O) ▸ 전기공사업체 시공	▸ 전력기술관리법 ▸ 분리도급(O) ▸ 전기감리원 감리
통 신	▸ 정보통신공사업법 ▸ 분리도급(x) ▸ 정보통신설계업체 설계	▸ 정보통신공사업법 ▸ 분리도급(O) ▸ 정보통신공사업체 시공	▸ 정보통신공사업법 ▸ 분리도급(x) ▸ 정보통신감리원 감리

※ 시공사 선정 단계(㉔)에서의 공종별 분리도급은 이미 각 공종별 관련 법령에서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음

※ 설계 단계(㉑)와 감리자 지정 단계(㉓)에서의 공종별 분리도급은 현재 전기 공종에서만 시행되고 있음.